

「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전교통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평창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 변경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 변경(안 제2조제2항3호, 4호, 6호, 7호)
  - 강릉보훈지청장 → 강원동부보훈지청장
  - 평창교육장 →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
  - 제1670부대 1·3대대장 → 제8087부대 1대대장
  - 국군 제557-5 안보지원대 지역담당관 →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
-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명칭 변경(안 제2조제3항1호~4호)

- 총무담당 간사 : 행정과장 →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
- 민방위담당 간사 : 행정과장 →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
- 예비군담당 간사 : 제1670부대 1·3대대 → 제8087부대 1대대
- 참조규정 변경(안 제2조제5항)
  - “제2항제8호”를 “제2항제10호”로 변경
- 대외직명 변경(안 제4조제4항)
  - “총무담당”을 “총무팀장”으로 변경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- 본 조례안은
  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에 근거한
  -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
  - 평창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기관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
  - 변경된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현행화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2조제2항의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칭을
  - 기관 등의 조직개편에 따른 호칭을 정리 하려는 것이며
  - 안 제2조제3항의 협의회 간사 명칭을
  - 총무담당 간사 중 “행정과장”을 “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”으로
  - 민방위담당 간사 중 “행정과장”을 “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”으로
  -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.
- 검토결과
  -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간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  -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, 제4호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**행정과장**”을 “**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**행정과장**”을 “**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**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“**제1670부대 1·3대대**”를 “**제8087부대 1대대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**제2항제8호**”를 “**제2항제10호**”로 한다.

3. 강원동부보훈지청장

4.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

6. 제8087부대1대대장

7. 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

제4조제4항 중 “**총무담당**”을 “**총무팀장**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</p> <p>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<u>강릉보훈지청장</u></p> <p>4. <u>평창교육장</u></p> <p>5. (생 략)</p> <p>6. <u>제1670부대 1·3대대장</u></p> <p>7. <u>국군 제557-5 안보지원대 지 역담당관</u></p> <p>8. ~ 10. (생 략)</p> <p>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, 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고, 협의회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</p> <p>1. 총무담당 간사 : <u>행정과장</u></p> <p>2. 민방위담당 간사 : <u>행정과장</u></p> <p>3. 예비군담당 간사 : <u>제1670부</u></p>	<p>제2조(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강원동부보훈지청장</u></p> <p>4. <u>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제8087부대1대대장</u></p> <p>7. <u>군사안보지원부대 평창지역 관계관</u></p> <p>8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통합방위업 무 담당부서장</u></p> <p>2. ----- <u>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</u></p> <p>3. ----- <u>제8087부</u></p>

대 1·3대대 예비군 업무 담당과장

4. 작전담당 간사 : 평창경찰서 작전업무 담당과장(병종사태), 제1670부대 1·3대대 작전과장(을종사태 이상)

5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제2항제8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

① ~ ③ (생략)

④ 읍.면의 본부장은 읍, 면장으로 하고, 상황실장은 총무담당으로 하며,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.

⑤ (생략)

대 1대대 -----

-----

4. -----

-----

제8087부대 1대대-----

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2항제10호-----

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
----- 총무팀장-----

-----

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